*자동차공학은 한국의 힘 !*

# 한국자동차공학회
# 2023년도 회장 및 부회장 입후보 등록 공고

우리나라 자동차공학을 대표하는 우리학회에서는 정관 제15조 및 임원선출·선임규정에 따라 2023년도 회장 및 부회장 입후보자 등록을 공고합니다. 입후보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회장은 우리학회 임원선출·선임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학계소속에서 선출됩니다.**

**1. 회장 및 부회장 정수**

1) 회　장 : 1명 (학계 소속)

2) 부회장 : 11명 (학계소속 5명, 지회소속 1명, 산업계·연구계 소속 5명)

- 학계소속 부회장은 2 ~ 3년제 대학 소속 1명 포함
- 산업계·연구계 소속 부회장은 부품업체 소속 1명 포함

**2. 입후보자 자격**

1) 회　장 : 학회 부회장 또는 부문회장을 역임하고 학회 기여도가 큰 산업계소속 종신회원

2) 부회장 : 학회 부회장, 이사, 지회장 또는 부문회장을 역임하고 학회 기여도가 큰 종신회원

**3. 제출서류 및 접수기간**

1)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1부 (소정양식)
- 이력서 1부 (소정양식, 2매 이내, 사진포함)
- 소견서 1부 (소정양식, 2매 이내)

2) 접수기간 : **8.22(월) 10:00 ~ 9.8(목) 정오까지**

**4. 제출방법 및 제출처**

1) 제출방법 : 이메일

2) 제출 및 문의 : 한국자동차공학회 서윤주 국장 (T. 02-564-3971, e-mail.　auto@ksae.org)

**5. 선출일정**

| 일정 | 내용 | 비고 |
|---|---|---|
| 8.22(월) | 입후보자 등록 공고 | · 평의원회 개최 52일전<br>· 임원선출·선임규정 제4조 제1항 |
| 9.8(목) | 입후보자 등록 마감 | · 평의원회 개최 34일전<br>· 임원선출·선임규정 제4조 제1항 |

| 일정 | 내용 | 비고 |
|---|---|---|
| 10.4(화) | 입후보자 홈페이지 공지 및 평의원에게 통보 | · 평의원회 개최 9일전<br>· 임원선출·선임규정 제4조 제2항 |
| 10.13(목) | 2023년도 회장단 선출 (2022년도 평의원회) | · 정기총회 개최 35일전<br>· 정관 제15조 제1항 |
| 11.17(목) | 2023년도 임원 인준 | · 2022년도 정기총회<br>· 정관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

**6. 선출방법**

- 2022년도 평의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
- 2022년도 정기총회에서 임원 인준

**7. 관련규정**

- 정관 제11조 ~ 제15조
- 임원선출·선임규정

**8. 기타사항**

1) 회장은 중임이 불가합니다.
2) 학계소속 부회장의 연임은 최대 3년으로 중임할 수 있습니다(산업계 및 연구계 연임제한 없음).
3) 학계와 연구계 소속 회장 및 부회장은 소속기관의 정년퇴직일 이내에 임기를 마칠 수 있어야 합니다.
4)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은 임기 중에 회장 및 부회장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5) 입후보 등록서류 제출 후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의 변경이나 수정은 불가합니다.
7) 입후보자를 열거하는 기표번호 순서는 등록신청 접수순으로 부여합니다.
8) 투표는 입후보자 전원이 열거된 투표용지 또는 전자적 방법에 기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붙임 1.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2. 이력서
3. 소견서
4. 회장단 선출 관련규정

**한국자동차공학회 회장단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자동차공학은 한국의 힘 !*

[붙임 1]

# 회장 및 부회장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 | |
|---|---|
| 성 명 | |
| 생년월일 | 년 월 일 (만 세) |
| 근 무 처 | |
| 직 위 | |
| 신청분야<br>(■표시) | □ 회 장 (학계소속)<br>□ 부회장 (학계소속 : 4년제 대학)<br>□ 부회장 (학계소속 : 2 ~ 3년제 대학)<br>□ 부회장 (산업계 및 연구계 소속)<br>□ 부회장 (부품업체 소속)<br>□ 부회장 (지회소속) |

본인은 한국자동차공학회 종신회원으로서 2023년도 한국자동차공학회
□ 회장 / □ 부회장 입후보자로 등록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 (인)

**한국자동차공학회 회장단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붙임 2]

<table>
<tr><th colspan="5">(□ 회장 □ 부회장) 입후보자 이력서</th></tr>
<tr><td>성 명</td><td colspan="3"></td><td rowspan="3">사진</td></tr>
<tr><td>근 무 처</td><td></td><td>부 서</td><td></td></tr>
<tr><td>직 위</td><td></td><td>생년월일</td><td></td></tr>
<tr><td>학 력</td><td colspan="4"></td></tr>
<tr><td>학회경력</td><td colspan="4"></td></tr>
<tr><td>일반경력</td><td colspan="4"></td></tr>
<tr><td>수상경력</td><td colspan="4"></td></tr>
<tr><td>연구개발<br>실적</td><td colspan="4"></td></tr>
</table>

[붙임 3]

| 기표번호 | |
|---|---|

# (□ 회장 □ 부회장) 입후보자 소견서

| | | |
|---|---|---|
| 성 명 | | 사진 |
| 근 무 처 | | |
| 직 위 | | |

*2매 이내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4]

## ▌ 정관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1인 이내
3. 이사 20인 이상 40인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

② 필요시에 별도로 무임소 임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자격)
임원은 종신회원이어야 한다.

제13조 (무보수)
학회 비상근 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①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1년,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잔여임기가 1/3 이상 남았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1/3 미만일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하며, 감사는 차점자로 보선한다. 단,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회장은 중임할 수 없으며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중임할 수 있다.
⑤ 학회임원 중 회장과 부회장만이 법원등기를 하도록 한다.

제15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회장, 부회장은 정기총회 1개월 전에 개최하는 정기 평의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거쳐 선출한다. 단, 임기 중 결원으로 인한 부회장, 감사, 이사의 충원은 예외로 한다.
② 이사는 회장이 부회장의 자문을 받아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거쳐 선출한다.
③ 감사는 학생회원을 제외한 개인회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④ 임원선출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⑤ 선출된 임원은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임원선출 · 선임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자동차공학회 정관 제15조에 따라 한국자동차공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임원의 선출·선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장 및 부회장 선거관리위원회)

① 회장 및 부회장 선출을 위한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선관위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 이내로 구성하며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선관위 임기는 이사회 선임일부터 당해연도 11월 말일까지로 한다.

④ 선관위 위원장 또는 위원은 임기 중 회장 및 부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

제3조 (회장 및 부회장 후보 자격)

① 회장 입후보자의 자격은 부회장 또는 부문회장을 역임하고 학회 기여도가 큰 종신회원으로 한다.

② 부회장 입후보자의 자격은 부회장, 이사, 지회장 또는 부문회장을 역임하고, 학회 기여도가 큰 종신회원으로 한다.

③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잔여임기가 1/3 이상 남아 이사회에서 보선할 때에는 별도의 자격을 두지 않는다.

④ 회장 및 부회장 입후보자 중에서 학계 및 연구계와 같이 정년퇴직일이 정해져있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정년퇴직일 이내에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를 마칠 수 있어야 한다. 단, 산업계는 예외로 한다.

제4조 (후보등록 및 공고)

① 선관위 위원장은 평의원회 개최 50일 전에 차기년도 회장 및 부회장 입후보자의 등록을 공고하여야 하며, 30일 전까지 입후보자로부터 학회 소정 양식의 등록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선관위 위원장은 차기년도 회장 및 부회장 입후보자 명단과 등록서류를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평의원에게 별도 이메일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때 고지기간은 평의원회 개최 전 7일 이상으로 한다.

③ 소정양식의 등록서류는 아래와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는 <붙임1>과 같다.
2. “회장 및 부회장 입후보자 이력서”는 <붙임2>와 같다.
3. “회장 및 부회장 입후보자 소견서”는 <붙임3>과 같다.

제5조 (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학계 소속과 산업계 · 연구계 소속에서 교대로 선출한다. 단, 산업계 · 연구계 소속 선출은 완성차업체 2회, 연구계 1회 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장의 선출은 선관위에 등록한 회장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평의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자 과반수로 결정한다. 단, 최다 득표수가 과반수가 아닐 경우에는 다득표자순으로 2인만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③ 회장 입후보자가 1명일 때에는 투표없이 회장으로 결정하며 총회에서 추인한다.
④ 투표는 회장 입후보자 전원이 열거된 투표용지 또는 전자적 방법에 기표하는 방식으로 한다.
⑤ 회장 입후보자를 열거하는 기표번호 순서는 접수순으로 한다.
⑥ 기표는 회장 입후보자 1명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기표가 없는 투표 또는 2인 이상 기표된 투표는 무효로 한다. 단, 평의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입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는 유효로 한다.

제6조 (부회장의 정수)
① 부회장은 학계소속 5명 이내, 지회소속 1명 이내, 산업계·연구계 소속 5명 이내로 한다.
1. 학계소속 부회장은 2 ~ 3년제 대학소속에서 1명을 포함한다.
2. 산업계·연구계 소속 부회장은 부품업체 소속에서 1명을 포함한다.
② 학계소속 부회장의 연임은 최대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③ 부품업체 소속은 대기업은 제외한다.

제7조 (부회장의 선출)
① 부회장의 선출은 선관위에 등록한 부회장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평의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하되 소속별로 투표하여 다득표 순으로 결정한다. 단, 동점자로 인해 소속별 정수를 넘어선 경우 동점자만을 대상으로 재투표하여 다득표자를 선출한다.
② 기표는 입후보자에 대해서 소속별 부회장 정수 이내에서 복수로 할 수 있다. 기표가 없는 투표 또는 소속별 부회장 정수보다 많이 기표된 투표는 무효로 한다.
③ 부회장 입후보자의 수가 제6조 소속별 범위 내에 있을 경우 투표없이 해당 소속별 입후보 전원을 바로 부회장으로 결정하여 총회에서 추인한다.
④ 투표는 소속별로 소속별 부회장 입후보자 전원이 열거된 투표용지 또는 전자적 방법에 기표하는 방식으로 한다.
⑤ 부회장 입후보자를 열거하는 기표번호 순서는 접수순으로 한다.
⑥ 평의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입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는 유효로 한다.

제8조 (이사의 선임)
① 회장은 부회장의 자문을 받아 종신회원 중에서 이사를 선임한다.
② 회장은 이사 후보자 선정을 위해 종신회원 중에서 공모할 수 있다.
③ 학계 및 연구계 소속 이사의 임기는 연임 시에 최대 2년으로 하되 중임을 포함하여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 (투표 및 인준)
① 회장과 부회장 선출에는 현회장과 전임회장이 참가하여 투표할 수 있다.
② 회장 및 부회장 선출자와 이사 선임자가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여도 인준할 수 있다.

제10조 (무임소 임원)
① 정관 제11조와 정관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학회에 무임소 임원을 둘 수 있다.
② 무임소 임원은 무임소 부회장과 무임소 이사로 나눈다.
③ 무임소 부회장은 8명 이내, 무임소 이사는 12명 이내로 한다.